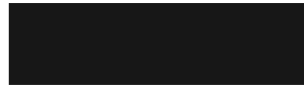


판 결

사 건



손해배상(기)

원 고



피 고

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

담당변호사



변 론 종 결



판 결 선 고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6,533,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. 2. 8.부터 2026. 2. 3.까지는 연 5%의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4/5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